

## 대학원 유연학기제 운영 규정

제정 2018. 6. 15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대학원학칙(이하 ‘학칙’이라 한다) 제11조의2(대학원학기)의 규정에 의한 유연학기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“유연학기제”라 함은 학위수여를 목적으로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의 운영기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.

**제3조(운영시기)** ① 유연학기제 운영은 학칙에 따른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학기의 개시일은 여름학기는 7월 1일, 겨울학기는 1월 1일부터로 한다. 다만, 대학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기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.

**제4조(학점당 이수시간 등)** 유연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, 과목당 45시간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교육상 필요한 경우 과목당 시간을 30시간으로 할 수 있다.

**제5조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** 유연학기제로 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정규학기로 입학한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**제6조(모집단위)** 유연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과(전공)는 학칙 제3조 별표 1과 같다. 필요한 경우 총장이 운영 학과(전공)를 지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대상 및 선발)** ① 유연학기제 입학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대학의 교직원 및 전문가로서 입학자격을 갖춘 외국인
2.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재직자

② 선발 시기와 절차는 학칙 등 관련규정에 따르며,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.

**제8조(등록 및 반환)** ① 학생은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연간 최소 2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, 수업연한 동안 다음 각 호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.

1. 석사학위과정 : 4학기 이상
2. 박사학위과정 : 5학기 이상

②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32조제3항에 따르되,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 이 경우 휴업일은 제외한다.

1. 학기 개시일로부터 5일까지 :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
2. 학기 개시일로부터 5일이 지난날부터 10일까지 :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
3. 학기 개시일로부터 10일이 지난날부터 15일까지 :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4. 학기 개시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날 : 반환하지 아니함

**제9조(교육과정 및 이수)** 유연학기제 교육과정은 정규학기 교육과정에 따르며, 이수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**제10조(수업 시간표 및 책임시수 등)** ① 매 학기 수업은 개강 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② 학생은 매 학기 수강할 교과목을 전공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하여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.

③ 전임교원이 유연학기제 운영기간에 담당할 교과목은 정규 학기 책임시수에 포함할 수 있다.

④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의 담당 교과목에 대한 강사료(초과 강사료를 포함한다)는 별도로 책

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**제 11조(성적)** 성적 인정 기준은 학칙 제21조에 의하며, 성적 인정 시기는 매 학기 말에 한다.

**제 12조(휴학 및 복학)**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동의를 받아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유연학기제의 휴학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, 복학 시기는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동의를 받아 대학원장이 허가한다.

③ 입학 후 첫 학기 동안은 휴학할 수 없으며, 학기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휴학하는 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.

④ 개강 후 5일이 지난 날부터 일반휴학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.

1. 학기 개시일로부터 5일이 지난날부터 10일까지 : 등록금의 1/3 납부
2. 학기 개시일로부터 10일이 지난날부터 15일까지 : 등록금의 1/2 납부
3. 학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초과자 : 등록금 전액 납부

**제 13조(준용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등 본 대학교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#### 부 칙(2018. 6. 15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